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관 규정

제정 2016. 01. 11.

개정 2018. 04.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나루아트센터(이하 "공연장" 이라 한다)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정의) ① "대관" 이라 함은 공연, 준비, 연습, 녹화, 촬영, 전시 등을 위하여 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 라 함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③ "사용료" 라 함은 대관자가 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사용하면서 납부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기간에 따라 기본대관과 장기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전시)대관, 준비(준비, 연습, 철수)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4.1.>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재단이 지정한 기간에 일괄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 잔여기간이 발생한 경우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④ 기본대관은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신설 2018.4.1.>

⑤ 장기대관은 8일 이상의 기본 대관을 말한다. <신설 2018.4.1.>

제4조(대관의 범위)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과 같다.

① 공연장 : 대공연장(601석), 소공연장(167석)

② 전시실 : 272㎡(80평)

③ 부대설비 : 피아노, 무대기계,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등

제2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전시실 제외)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관일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대관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전시실 대관 사용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이다. 별도의 사용시간에 대하여는 재단과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계약 체결시 기본 대관료의 30%를 납부하고, 사용일 10일전까지 잔금 70%를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한다. 단, 대관 승인일로부터 사용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 통보를 받은 익일에 계약 체결을 하고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다.

③ 대관 일정 변경 및 연장 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금 및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관자에게 시행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대관자의 서면확인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부대설비 사용료는 최초공연 시작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8일 이상의 대관 시 월요일을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장은 휴관하며, 사용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대 점검일을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

⑦ 재단의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⑧ 광진구청 또는 재단이 주최하는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를 100% 감면할 수 있으며, 후원하는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4.1.>

⑨ 8일 이상의 장기대관의 경우 기본 대관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한다. <신설 2018.4.1.>

제7조(사용료의 환불) ① 절차에 따라 재단에 입금한 사용료는 임의로 환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미사용 일수에 해당되는 사용료 100% 반환)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미사용 일수에 해당되는 사용료 100%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이후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관취소 신청서' (별지 제 5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재단은 [별표2]의 요율을 적용하여 환불한다.

제3장 대관신청 및 승인

제8조(대관신청) ① 대관 신청자는 공연장(전시실)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와 공연(전시)계획서[별지 제2호,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신청서 제출 후 대관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를 사용할 경우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공연시작일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관의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공연장 시설, 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3.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 특정종교의 포교(단, 종교음악행사는 허용)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4. 대관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
5.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재단이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제10조(대관승인) ① 재단은 대관신청인이 제출한 대관신청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② 재단은 대관심의에 있어 대관의 필요성, 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정기대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내의 재단 직원(간부급)으로 구성하되 사장이 위촉하고,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한다.

④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대관자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4장 대관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나루아트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반입하는 장치 및 설치물은 필히 방염 처리를 하여 안전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신청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공연(전시)을 진행해야 하며,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⑤ 대관자는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재단이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⑥ 대관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기타홍보물 등을 부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재단은 대관자와 협의 없이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⑦ 대관자는 공연 중 녹화, 방송 또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대관자는 반입된 물품(화환, 화분 등)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⑨ 대관자는 무대진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재단 담당 직원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⑩ 대관자가 위의 항목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공연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으며, 향후 대관에 있어서 해당단체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배상책임) ① 재단이 제12조 제10항에 의거하여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관련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대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관자는 행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사 진행(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공연장의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책임 범위를 결정한다.

③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 부속설비, 부속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대관자는 재단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대관자는 재단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적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5장 입 장 권

제14조(입장권의 종류) 대관자가 발행하는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초대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무료초청공연의 경우에도 관람질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좌석이 지정된 무료 초대권을 가지고 입장할 수 있도록 대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발행) ① 입장권 발행은 공연제목, 일시, 장소, 좌석번호, 티켓가격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②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입장권 발행 전 사용료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장권 판매행위를 시작하면 재단은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유보석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좌석과 수량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지며, 재단은 객석수를 초과하는 입장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6조(규정의 효력) ① 이 규정은 계약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관련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따르며, 해석에 대해서는 재단의 해석을 따른다.

제17조(규정 위반시 책임 및 관할법원) ①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위반자가 책임지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적분쟁 발생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단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04.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 표 1] <개정 2018.4.1.>

나루아트센터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공연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한다(전시실 사용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로 한다).
2. 기본대관은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며, 대관료는 공연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3. 준비.연습.철수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오후 10시이후)의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100%를 적용한다. (1시간 이내로 철수 시,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기본 대관료의 10%를 할증한다.
5. 장기대관은 8일 이상 대관을 말한다.
6.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7.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포럼/세미나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행사로 한정한다.

나. 시설물별 사용료

□ 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 설 명	포럼 세미나	순수음악 (클래식/재즈/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단체행사	방송.촬영
대공연장 (601석)	600,000	800,000	1,000,000	1,300,000	1,600,000	2,000,000	2,500,000
소공연장 (167석)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800,000

□ 전시실 기본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전 시 실	200,000	. 1일 대관 10:00~19:00 . 추가시간 발생시 1시간당 50,000원 . 기본 냉난방비 포함

[별 표 2] <개정 2018.4.1.>

대관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 기준

<table>
<tr><th>해지시점
대관기간</th><th>사용예정일로부터
120일 이전</th><th>사용예정일로부터
120~150일 중</th><th>사용예정일로부터
150일 이후</th></tr>
<tr><td>기본대관(7일 이하)</td><td rowspan="2">반환 안함</td><td>납부한 계약금 중 30%</td><td rowspan="2">전액 반환</td></tr>
<tr><td>장기대관(8일 이상)</td><td>반환 안함</td></tr>
</table>

[별표 3] <개정 2018.4.1.>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종 류		기 준	단가(원)	비 고
피아노	대공연장	Steinway D-275	1대(1회)	60,000	조율비 별도(지정조율사)
	소공연장	삼익그랜드(225)	1대(1회)	30,000	
무대	음향반사판		1식(1일)	50,000	
	덧마루		1작품	50,000	기본 100m²무료 설치 인력 별도
	댄스플로어		1식(1일)	70,000	테이프 및 설치/철수 인력 별도
음향	유선마이크	다이나믹	1개(1일)	5,000	
		콘덴서	1개(1일)	10,000	
	무선마이크 (Sennheiser EW500 / Shure QLXR)		1개(1일)	20,000	건전지 별도
	모니터스피커		1대(1일)	20,000	
	대공연장	무선인터컴	1대(1일)	20,000	건전지 별도(대관자 부담)
	대공연장	빔 프로젝터/스크린	1일	300,000	·Barco 12,000(고정형) ·Panassonic 16,000ANSI XGA(이동형)
	소공연장		1일	50,000	5000ANSI
	음향디자인		1작품	500,000	크루비 별도
조명	Follow Spot 2KW		1대(1일)	30,000	대공연장/ 인력 별도
	무빙라이트 (Moving Light)	MAC500 Spot	1대(1일)	30,000	대공연장 / 콘솔 보유
		Moving LED Par 102	1대(1일)	10,000	
		Aleda B-EYE K10(15W)	1대(1일)	30,000	
	Par 46		8대(1일)	5,000	
	Par 64		1대(1일)	1,000	
	Source Four		1대(1일)	2,000	
	포그머신		1대(1일)	30,000	포그액 별도
	조명디자인		1작품	500,000	크루비 별도
기타	대공연장	냉난방	1회 (3시간)	80,000	
	소공연장			40,000	
	리셉션 장소 사용(로비)		1회	50,000	재단 협의 필요
	중계방송	TV	1공연	300,000	
		라디오 및 인터넷	1공연	200,000	